

2014년 1월 18일 경찰승진시험 문제 해설

과목 : 경찰실무Ⅲ

해설 : 송 광 호

◆ 문제 분석표 ◆

구분	전체 문제수 (40)	목차		세부문제수	비고	특징
정보론	8	정보이론		1번, 2번(조문),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조문문제 : 1개	1. 실무문제집 문제에 대한 변 형도 : 낮음. 2. 정보 : 보안 : 외사 : 윤리 = 11 : 12 : 11 : 6 3. 전체 40문제 중 조문문제 : 13개 조문판례혼합문제 : 1개 판례문제 : 1개 4. 전체 난이도 : 중하급 5. 박스형 개수문제 : 0개 6. 경찰윤리론은 경찰실무ⅠⅡ 와 동일함. 7. 설명형 문제도 다수 있지만 단답형 문제도 다수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을 필수적으로 암기하여야 함. 8. 시험 직전에 개정된 법령 및 행정규칙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장에 들어갈 것.
	3	정보경찰의 활동		9번(판례), 10번(조문), 11번(조문)	조문문제 : 2개 판례문제 : 1개	
보안론	4	총론	국가안전보장 일반론	12번		
			공산주의의 도전과 실패	13번		
			북한의 대남전략전술	14번		
			국내의 좌익폭력세력	15번		
	8	각론	간첩침투전술			
			방첩활동	16번, 17번, 18번		
			보안수사	19번(판례, 조문), 20번(조문)	조문문제 : 1개 조문판례 : 1개	
			보안판찰	21번(조문)	조문문제 : 1개	
			남북교류협력 제도	22번(조문)	조문문제 : 1개	
			북한이탈주민 이해 및 대책	23번(조문)	조문문제 : 1개	
외사론	7	총론	국제화와 외사경찰	24번		
			다자간 국제경찰 협력기구	25번(조문), 26번	조문문제 : 1개	
			국제적인 치안위협요소			
			외사경찰의 주요대상	27번(조문), 28번(조문), 29번, 30번	조문문제 : 2개	
	4	각론	외사경찰의 업무			
			외사기획활동	31번		
			국제교류협력활동	32번		
			외사정보활동			
			외사보안활동	33번(조문)	조문문제 : 1개	
			외사수사활동			
윤리론	2	경찰과 윤리	서론	35번		
			경찰윤리의 기초	36번		
	4	주제별 탐구	현대국가와 경찰환경			
			바람직한 경찰모델과 전문직업화			
			경찰의 일탈	37번(조문)	조문문제 : 1개	
			경찰의 문화	38번		

		경찰조직과 경찰인	40번	
		경찰인의 윤리표준과 경찰윤리강령	39번(조문)	

경찰실무 유료 모의고사 진행에 관한 공지

1. 유료 모의고사를 진행하는 과목

가. 경찰승진시험과 경찰간부후보생시험을 준비하는 경우 :

경찰실무종합 - 경감급, 경위급 대상

경찰실무1 - 경사급, 경장급 대상

경찰실무2 - 경사급, 경장급 대상

경찰실무3 - 경사급, 경장급 대상

경찰학개론 - 경찰간부후보생시험 준비자 대상

나. 일반순경, 경찰행정학과특채를 준비하는 경우 : 경찰학개론, 수사실무

2. (위 1.의 가.)진행과정은 아래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가. 진도별 1차 모의고사 : 1회당 40문항씩 12회

나. 진도별 2차 모의고사 : 1회당 40문항씩 12회

다. 전범위 모의고사 : 1회당 40문항씩 12회

3. (위 1.의 나.)진행과정은 아래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가. 진도별 모의고사 : 1회당 20문항씩 10회

나. 전범위 모의고사 : 1회당 20문항씩 10회

4. 출제범위

가. 기출문제

나. 기출문제의 변형문제

다. 경찰공제회 실무문제집의 변형문제

※ 실무문제집에서 언급하는 법령과 행정규칙 등 관련조문 문제도 출제합니다.

※ 실제로 경찰승진시험은 실무문제집의 문제와 똑같은 출제되지 않고 실무문제집의 변형문제로 출제됩니다.

※ 경간부시험과 순경시험은 실무문제집의 변형문제뿐만 아니라 약간 범위를 벗어나서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5. 보통 1주당 1회의 모의고사를 다음 카페 "경찰실무교실-송광호"의 해당콘텐츠에 게재합니다.

6. 모의고사의 구성

모의고사는 (1) 문제파일과 (2) 정답 및 해설파일 등 2개로 이루어집니다.

파일은 pdf파일로 올려지므로

pc나 휴대전화로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도 있고

출력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 휴대전화에는 Adobe Reader를 다운로드하여야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7. 매회 박스형개수 문제

매회 박스형개수 문제는 40문항 기준으로 8개에서 20개로 합니다.

8. 해설

해설부분에는 틀린 설문에 대한 해설을 주로 하나

옳은 설문이라하더라도 난해한 경우나 근거를 알아야 할 경우에는 해설을 붙이며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근거조문을 붙여서 개인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출제된 문제와 관련 조문은 꼭 혼자서라도 찾도록 합니다.

9. 모의고사 실시 시작 : 2014년 3월

※ 유료 모의고사비 결제 방법은 다음 카페 “경찰실무교실-송광호” <http://cafe.daum.net/no1police> 에서 소개 합니다.

※ 062-416-9429 로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2014년 1월 18일

“경찰실무교실-송광호”의 송 광 호 올림.

1. 정보의 개념에 대한 주요학자들의 견해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마크 로웬탈(Mark M. Lowenthal) - 정보란 정책결정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지식을 말하며, 이를 위해 수집 가공된 것
- ② 셔먼 켄트(Sherman Kent) - 정보는 국가정책 운용을 위한 지식이며 활동이고 조직
- ③ 칼본 클라우제비치(Carl von Clausewitz) - 적국과 그 군대에 대한 제반 첩보
- ④ 에이브럼 숄스키(Abram N. Shulsky) - 정보는 외국이나 국외지역과 관련된 제반 첩보자료들을 수집·평가·분석·종합·판단의 과정을 거쳐서 생성된 산출물

정답 ④

해설 ④ (틀림) 에이브럼 숄스키(Abram N. Shulsky) - 국가안보 이익을 국대화하고, 실제적 또는 잠재적 적대세력의 위협을 취급하는, 정부의 정책 수립 및 정책의 구현과 연관된 자료
제프리 리첼슨(Jeffery Richelson) - 정보는 외국이나 국외지역과 관련된 제반 첩보자료들을 수집·평가·분석·종합·판단의 과정을 거쳐서 생성된 산출물

정리 정보의 개념에 대한 주요학자들의 견해(① 한희원, 국가정보학원론, ② 김윤덕, 국가정보학, ③ 경찰공제회, 경찰실무Ⅲ)

제프리 리첼슨 (Jeffery Richelson)	정보는 외국이나 국외지역과 관련된 제반 첩보자료들을 수집·평가·분석·종합·판단의 과정을 거쳐서 생성된 산출물
마이클 허만 (Michael Herman)	정부 내에서의 조직된 지식
에이브럼 숄스키 (Abram N. Shulsky)	국가안보 이익을 국대화하고, 실제적 또는 잠재적 적대세력의 위협을 취급하는, 정부의 정책 수립 및 정책의 구현과 연관된 자료
마크 로웬탈 (Mark M. Lowenthal)	정보란 정책결정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지식을 말하며, 이를 위해 수집 가공된 것
마이클 워너 (Michael Warner)	정보는 이측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다른 국가나 다양한 적대세력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그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단지 그들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비밀스러운 그 무엇
데이비스 (G.B. Davis)	정보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필요한 형태로 처리된 데이터이며 현재 또는 정책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실현되든가 또는 가치를 인정받는 것
워너	정보란 인간이 외계에 적응하려고 행동하고, 또 그 조절행동의 결과를 외계로부터 감지할 때에 외계와 교환하

(A. N. wiener)	는 내용
셔먼 켄트 (Sherman Kent)	정보란 국가정책 운용을 위한 지식이며 조직이고 활동 ← 저서 '전략정보'에서의 정의
칼본 클라우제비치 (Carl von Clausewitz)	(1) 적국과 그 군대에 대한 제반 첩보 (2) 정보란 적과 적국에 관한 우리들의 지식의 총체를 의미하며 전쟁에 있어서 아군의 계획 및 행동의 기초를 이루는 것 ← 저서 '전쟁론'에서의 정의

2.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의 규정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개인정보란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사자(死者)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② 공공기관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다.
- ③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더라도 개인정보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 ④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정답 ③
해설 ①

① (옳음)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

② (옳음)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제6호 가목

③ (틀림)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도 개인 정보에 포함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

④ (옳음)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제3호

조문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3. 정보를 사용수준에 따라 분류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략정보 · 기술정보 ② 인간정보 · 기술정보
③ 기본정보 · 현용정보 · 판단정보 ④ 적극정보 · 보안정보

정답 ①
해설 ①

① (옳음) 사용수준에 따른 분류 : 전략정보, 전술정보

② (틀립) 수집활동에 따른 분류 : 인간정보, 기술정보

- 정리 ③ (틀림) 분석형태에 따른 분류 :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④ (틀림)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 적극정보, 소극(보안)정보
 정보의 분류(문경환·황규진, 경찰정보론, 경찰대학, 2011, 17-24면 참고)
 1. 사용수준에 따른 분류 : 전략정보, 전술정보
 2.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 적극정보, 소극(보안)정보
 3. 정보출처에 따른 분류 : 근본-부차적 출처, 정기-우연 출처, 비밀-공개 출처
 4. 정보요소에 따른 분류 :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과학
 5. 분석형태에 따른 분류 :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6. 수집활동에 따른 분류 : 인간정보, 기술정보

4. EEI(정보기본요소)와 SRI(특별정보요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정답 ④
 해설 ④ (틀림) EEI(정보기본요소)는 사전에 반드시 정보수집계획서를 작성한다. 그러나 SRI(특별정보요구)는 사전에 수집 계획서를 필요치 않는다.
 정리 정보기본요소(EEI)와 특별정보요소(SRI)의 비교

정보기본요소 (EEI : Essential Elements of Information)	특별정보요소 (SRI : Special Requirements for Information)
(1) 정보의 기본요소(정보수집요구의 기본적 지침) (2) 국가지도자 또는 정책수립자가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요구사항 (3) 계속적·반복적으로 요구되는 정보 (4)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수집되어야 할 요구사항 (5) 사전에 반드시 정보수집요구계획서를 작성(요구형식으로는 서면이 원칙) (6) PNI와 같은 해당부서의 정보활동을 위한 일반지침	(1) 임시적이고 돌발적이며 특수지역적인 특수사항에 대한 단기적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요구 (2) 수시로 단편적 사항에 대하여 명령되는 것이 원칙 (3) 정보수집지침은 사안과 대상에 따라 상이하며 비교적 구체적·전문성이 요구(특정 주제에 대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요구) (4) 사전수집계획서를 불요 (5) S. R. I.의 요구형식은 구두로 하는 경우가 많음 (6) 통상 정보기관을 주로 S. R. I.에 의하여 정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5. 정보의 요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소순환과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정답 ②
 해설 ② (옳음) 정보의 요구단계에서는 “정보의 기본요소 결정 - 정보수집계획서의 작성 - 명령하달 - 수집활동에 대한 조정·감독”의 소순환과정을 거친다.
 정리 정보요구의 4단계 소순환과정

정보의 기본 요소 결정	요구의 내용을 한정하고 구체적인 요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정치·경제·사회·군사·수송·지리 등 어느 부분의 정보를 요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계
정보수집계획서의 작성	의의 정보를 요구할 때 어떤 내용을 누가,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수집·보고할 것인지 미리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
	작성시 고려사항 (1) 요소의 결정 : 요구하고자 하는 부문별 요소를 결정하여 명시할 것 (2) 요구되는 정보 : 부문별 요소에 속하는 구체적 항목의 정보 요구를 밝힐 것 → 여기서는 개괄적 큰 제목만을 적시하고 내용은 유추할 수 있도록 함 (3) 요구되는 정보에 관련된 배경정보 : 요구되는 정보의 필요성과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현실적 의의를

		이해시키는 한편 앞으로 예측하게 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배경 설명이 필요함 (4) 수집해야 할 첩보(세부활동지침) : EEI를 뒷받침하는 세부적·구체적 실제 활동지침을 제시할 것 (5) 수집기관 : 첩보수집을 책임질 기관을 명시할 것 ↔ 반드시 수집책임자를 지정할 필요는 없음 (6) 소요시간 : 첩보가 입수되어야 할 예정일자와 보고시기 등 임무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고려할 것. ↔ 첩보의 출처는 첩보수집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첩보수집계획서와는 관련(×) (7) 보고시기 : 첩보입수 예정일과 보고시기를 정하여 명시할 것 (8) 식별기호 : 정보요구를 기호로 대표할 수 있게 함으로써 관리의 합리화와 보안의 유지·강화를 꾀할 것
첩보수집의 명령하달	의 의	수집계획서가 완성되면 수집활동에 적합한 시기에 요구내용을 명령하는 단계
	하달방법	첩보수집의 명령은 구두나 서면으로 하달하게 됨
	명령 하달시 고려사항	(1) 정보기관의 능력을 고려할 것 (2) 하달되는 시간과 수집 보고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충분히 여유 있게 할 것 (3)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것 (4) 보안유지를 고려할 것
사후검토		(1) 정보기관의 활동을 조정·감독하기 위하여 요구된 내용이 수집기관에 의하여 잘 수집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없는 내용이나 첨가해서 보완하여야 할 요구사항은 없는지를 검토하는 단계 (2) 새로운 요구사항을 발견하였을 때는 보충요소를 결정하고 계획서를 작성하여 하달

6. 정보의 배포수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정기간행물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긴급한 정보, 즉 현용정보를 전달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것이 전화(전신)이다.
- 정보사용자가 공식회의·행사 등에 참석하여 물리적인 접촉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나 사실확인 차원의 단순보고에 활용하는 방식이 휴대폰 문자메시지이다.
- 배포수단의 결정요소로 정보내용의 형태와 양, 정보의 긴급성, 비밀등급, 정보의 사용목적 등이 있다.
- 정보사용자 또는 다수 인원에 대하여 개인이 정보내용을 요약하여 구두로 설명하는 것이 브리핑이다.

정답 ①

해설 ① (틀림) 정기간행물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긴급한 정보, 즉 현용정보를 전달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것이 **메모**(↔ **전화(전신)**(×))이다.
전화(전신)는 돌발적이고 긴급을 요하는 정보의 배포를 위해 제1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고 해외 주재기관 등에 전달하는데 효과적이거나, 보안유지가 특히 요구되는 방법이다.

정리 정보배포의 수단

비공식적 방법	(1) 질문에 대한 답변, 토의 형태로 직접 전달 (2) 분석관과 정책결정자간, 타 기관의 대표간 혹은 분석관 동료간에 이루어지는 수단
브리핑	(1) 정보사용자 또는 다수 인원에 대하여 개인이 정보내용을 요약하여 구두로 설명하는 것 (2) 시간을 절약한다는 장점이 있음. (3) 통상 강연식이나 문답식으로 진행함. (4) 현용정보의 배포수단으로 많이 이용함.
메 모	(1) 긴급한 경우에 내용을 요약하여 기록을 전달하는 방법 (2) 정보분석관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 (3) 정기간행물에 적절히 포함시킬 수 없는 긴급한 정보, 즉 현용정보를 전달하는데 주로 사용되며 신속성이 중요시됨. (4) 분석된 내용에 대한 요약이나 결론만을 언급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타 수단에 비해 떨어지는 단점은 있으나, 브리핑에 비하여 필기(筆記)하므로 증거를 남길 수 있고 발신자나 수신자의 서류철에 보관되는 이점이 있음.
일일정보 보고서	(1) 매일 24시간에 걸친 제반 정세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망라한 보고서 (2) 대부분이 현용정보이므로 신속한 전달이 필수적임. (3) 사전에 주의 깊게 고안된 양식에 의해 정기적으로 작성되며 복사되고 제한된 인원에게 배포됨.

정기간행물	(1) 광범위한 배포를 위하여 인쇄·출판되고, 주간이나 월간으로 배포 (2) 가장 최근의 중요한 진행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전달방법
특별보고서	(1) 누락된 정보가 다수의 사람이나 기관에게 이해관계가 있거나 가치가 있을 때 사용함. (2) 정보의 성질·긴급성 및 보고서 접수자의 필요성에 따라 장문 또는 세분되거나 개괄적으로 작성할 수 있음.
지정된 연구 과제보고서	(1) 어떤 기관 또는 사용자가 요청한 문제에 대하여 정보를 작성하고 배포 (2) 연구주제에 대하여 중점적인 연구를 통해 진행상황 및 향후정책대안 까지 제시되어야 함
서 적	정보가 다수인의 참고나 교범을 위하여 요구될 때 이용
연구참고용 보고서	정보사용자에게는 배포되지 않고 분석관 상호간의 연구를 돕기 위하여 작성되고 배포
도표 및 사진	내용을 쉽게 이해하는데 효과적이며 통상 타 수단의 설명을 보충하거나 요약하기 위하여 이용
필 립	반복하기 계속적인 전달이 요구되는 경우 이용되며 특히 교육적 전달방법으로 이용
전화(전신)	(1) 돌발적이고 긴급을 요하는 정보의 배포를 위해 제1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임. (2) 해외 주재기관 등에 전달하는데 효과적이나, 보안유지가 특히 요구되는 방법임.
휴대폰 문자메시지	(1) 사실확인 차원의 단순보고에 활용하거나 정보사용자가 공식회의·행사 등에 참석하여 물리적인 접촉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활용하는 방식(→ 최근 활용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 (2) 때로는 동시에 다수인을 대상으로 전파하는데 이용함.

7. 정보생산자와 정보사용자의 관계에 있어 정보사용자로부터의 장애요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른 정보와의 경쟁 ② 판단정보의 소외
③ 적시성의 문제 ④ 적합성의 문제

정답 ②

해설

① (틀림) 다른 정보와의 경쟁은 정보생산자로부터의 장애요인에 해당한다. 신문·방송·인터넷·사설정보지(기업 정보부서, 증권가 등)·각종 논문 및 서적 등 깊고 넓은 정보를 정보생산자의 한정된 능력으로 다루기는 힘들다.

② (옳음) 판단정보의 소의는 정보사용자로부터의 장애요인에 해당한다. 정보사용자는 장기적인 판단정보보다는 현안 정보를 요구하고 현용정보를 판단정보보다 높게 평가한다.

③ (틀림) 적시성의 문제는 정보생산자로부터의 장애요인에 해당한다. 정책결정자의 수요에 맞춰 적시에 정보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완벽한 보고서를 만든다고 시간변수를 간과한다면 좋은 정보보고서를 만들지 못한다.

④ (틀림) 적합성의 문제는 정보생산자로부터의 장애요인에 해당한다. 정보가 필요한 사안의 정책결정에 어느 정도 관련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정리

정보생산자와 정보사용자의 관계

정보사용자 로부터의 장애요인	(1) 정책결정자의 시간적 제약성 고위정책결정자들은 정책결정 이외의 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므로 정보생산자가 정책결정자의 일정에 쫓겨 정보를 성공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2) 정책결정자의 선호정보 정책결정자는 이미 선호정책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선호하는 정책대안을 지지하는 정보판단을 기대함 → 자신이 선호하는 정책과 반대되거나 모순되는 정보가 제공될 경우 이를 편향된 것이라고 비관하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음 (3) 정책결정자의 자존심 정책결정자가 가지게 되는 자기분야에서 최고라는 자신감 등으로 인해 정책결정자가 자신의 견해를 반대하는 정보들을 비실실적이고 잘 알지 못한다며 따르는 것이며 가치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기도 함 (4) 정보에 대한 과도한 기대 정책결정자들은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알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그것들에 대한 비밀스런 대답과 지침을 주기를 바라나, 그 기대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는 정보불신으로 이어지게 됨 (5) 판단정보의 소외 정보사용자는 장기적인 판단정보보다는 현안정보를 요구함 → 현용정보를 판단정보보다 높게 평가함	정보생산자가 정책결정자의 일정에 쫓겨 정보를 성공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정보생산자 로부터의 장애요인	(1) 다른 정보와의 경쟁 신문·방송·인터넷·시설정보지(기업 정보부서, 증권가 등)·각종 논문 및 서적 등 깊고 넓은 정보를 정보생산자의 한정된 능력으로 다루기는 힘겨움. (2) 편향적 분석의 문제 정보분석관들의 편향적 분석은 교육배경·정치적 신념·가치관 등에 따라 의식 또는 무의식 중에 나타나고, 정보분석관	정보생산자의 한정된 능력으로 다루기는 힘겨움.

개인·정보기관 또는 특정집단의 불순한 목적이 개입된 의도된 정보보고·정보왜곡은 정보의 신뢰성까지 의심받게 하며, 정보기관의 집단적 편견도 정보실패의 주요 원인임.

(3) 적시성의 문제
정책결정자의 수요에 맞춰 적시에 정보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완벽한 보고서를 만든다고 시간변수를 간과한다면 좋은 정보보고서를 만들지 못함.

(4) 적합성의 문제 : 정보가 필요한 사안의 정책결정에 어느 정도 관련되는가를 나타내는 것

(5) 판단의 불명확성
정책결정자들은 정보에서 명확한 답변을 주기를 기대하나, 정보의 속성상 모호하고 불명확한 사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고, 정보기관 간의 흥정을 통해 정보를 왜곡시키기도 하며, 각주를 통해 정보판단보고서의 초점을 흐려기도 함.

8. 타 전문과 자료를 종합·분석하여 작성한 보고서로서 지휘관으로 하여금 경력동원 등 상황에 대한 조치를 하게 하는 보고서

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책보고서 ② 견문보고서
③ 정보판단서 ④ 일반보고서

정답 ③

해설 ② (틀림) 견문보고서란 경찰관이 오관의 작용을 통해 근무·일상생활 중 지득한 국가시책 또는 국내외 치안상 필요한 제 견문을 신속·정확하게 수집·제보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③ (옳음) 정보판단서란 타 전문과 자료를 종합·분석하여 작성한 보고서로서 지휘관으로 하여금 경력동원등 상황에 대한 조치를 요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예를 들면, 관내 주민들이 인근에 건설예정 중인 골프장과 관련하여 집회를 계획중이라는 첩보에 따라 정보과의 甲경사가 관련 동향 및 경력대비가 요망된다는 취지로 작성한 보고서이다.

정리 정보보고서의 종류

전문보고서	경찰관이 오관의 작용을 통해 근무·일상생활 중 지득한 국가시책 또는 국내의 치안상 필요한 제 건문을 신속·정확하게 수집·제보하는 보고서
특별보고서	국내 치안상 중대한 위해를 미치거나 사회에 물의를 야기시킬 사항 및 중요시책자료에 관한 사항 또는 보안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상급관서에 보고하여야 하는 보고서 예 정보과에 근무하는甲경사가 현행 도로교통법이 국민의 법감정과 맞지 않아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을 발견하고 관련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하여 작성한 보고서
정보판단서	타 견문과 자료를 종합·분석하여 작성한 보고서로서 지휘관으로 하여금 경력동원등 상황에 대한 조치를 요하는 보고서 예 관내 주민들이 인근에 건설예정 중인 골프장과 관련하여 집회를 계획중이라는 첩보에 따라 정보과의甲경사가 관련 동향 및 경력대비가 요망된다는 취지작성한 보고서

9. 집회의 자유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집회에 있어서 사람의 다과(多寡)에는 제한이 없다.
- ② 헌법 제21조 제1항은 집회의 자유의 대상으로 '집회'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시위의 자유'도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이다.
- ③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협이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라면 허용된다.
- ④ 집회참가자에 대한 검문의 방법으로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집회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금지된다.

정답 ③

해설 ① (옳음)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 제3조의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특정한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 그 모이는 장소나 사람의 다수에 제한이 있을 수 없다(대판 1983.11.22, 83도2528).

② (음음) 집회의 자유는 집회를 통하여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사에 영향을 줄 자유를 포함하므로 이를 내용으로 하는 시위의 자유 또한 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이다(헌재결 2005.11.24, 2004헌가17).

③ (틀림)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공권력의 행위는 집시법에서 규정하는 집회의 금지, 해산과 조건부 허용이다.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되는 것이며, 특히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을 붙여 집회

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다(헌재 2003. 10. 30. 2000헌바67·83 (병합) 전원재판부).

- ④ (옳음)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단지 '평화적' 또는 '비폭력적' 집회이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정신적 대립과 논의의 수단으로서, 평화적 수단을 이용한 의견의 표명은 헌법적으로 보호되지만, 폭력을 사용한 의견의 강요는 헌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함으로써, 평화적 집회 그 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협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 되며, 개인이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반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에 대한 위협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헌법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주요행위는 집회의 준비 및 조직, 지휘, 참가, 집회장소?시간의 선택이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개인이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집회에 참가할 것을 강요하는 국가행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예컨대 집회장소로의 여행을 방해하거나, 집회장소로부터 귀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집회참가자에 대한 검문의 방법으로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집회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집회의 자유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금지한다(헌재결 2003. 10. 30. 2000헌바67, 83).

판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 중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부분 위헌소원**
[2000헌바67, 2003.10.30]

1. 집회의 자유의 이중적 헌법적 기능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집회의 자유도 다른 모든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자기결정과 인격발현에 기여하는 기본권이다. 뿐만 아니라,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한다.

2. 평화적 집회의 보장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단지 '평화적' 또는 '비폭력적' 집회이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정신적 대립과 논의의 수단으로서, 평화적 수단을 이용한 의견의 표명은 헌법적으로 보호되지만, 폭력을 사용한 의견의 강요는 헌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함으로써, 평화적 집회 그 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협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 되며, 개인이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반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에 대한 위협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헌법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3. 집회의 자유의 보장내용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주요행위는 집회의 준비 및 조직, 지휘, 참가, 집회장소?시간의 선택이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개인이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집회에 참가할 것을 강요하는 국가행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예컨대 집회장소로의 여행을 방해하거나, 집회장소로부터 귀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집회참가자에 대한 검문의 방법으로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집회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집회의 자유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금지한다.

4. 집회장소의 헌법적 의미

집회의 목적·내용과 집회의 장소는 일반적으로 밀접한 내적인 연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집회의 장소에 대한 선택이 집회의 성과를 결정짓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집회장소가 바로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5. 집시법이 옥외집회와 옥내집회를 구분하는 이유

집시법이 옥외집회와 옥내집회를 구분하는 이유는, 옥외집회의 경우 외부세계, 즉 다른 기본권의 주체와 직접적으로 접촉할 가능성으로 인하여 옥내집회와 비교할 때 법익충돌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의 행사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보다 자세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집회의 자유의 행사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집회의 자유와 충돌하는 제3자의 법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6. 최종적 수단으로서의 집회의 금지와 해산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공권력의 행위는 집시법에서 규정하는 집회의 금지, 해산과 조건부 허용이다.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되는 것이며, 특히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다.

7. 국내주재 외교기관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 중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입법목적

외교기관 인근에서의 집회는 일반적으로 다른 장소와 비교할 때 중요한 보호법익과의 충돌상황을 야기할 수 있고, 이로써 법익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와 같은 고도의 법익충돌상황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외교기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보호법익으로서는 국내주재 외교기관에의 자유로운 출입 및 원활한 업무의 보장, 외교관의 신체적 안전이 고려된다.

8. 집회금지장소에 관한 특별규정을 둔 것이 과도한 규제인지의 여부(소극)

특정 장소가 그 기능수행의 중요성 때문에 특별히 보호되어야 하고 중요한 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가 그 장소에서의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고 입법자가 판단하였다면,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입법자는 야간의 옥외집회나 특정 장소에서의 옥외집회의 경우와 같이 법익침해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미칠 영향이나 법익충돌의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규제를 할 수 있다.

9.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전면적인 집회금지가 반드시 필요한지의 여부(적극)

특정장소에서의 집회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한다는 일반적 추정이 구체적인 상황에 의하여 부인될 수 있다면, 입법자는 '최소침해의 원칙'의 관점에서 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전제된 추상적 위험성에 대한 입법자의 예측판단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인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첫째, 외교기관에 대한 집회가 아니라 우연히 금지장소 내에 위치한 다른 항의대상에 대한 집회의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전제된 법익충돌의 위험성이 작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제점은, 집회금지구역 내에서 외교기관이나 당해 국가를 항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다른 목적의 집회가 함께 금지된다는데 있다.

둘째, 소규모 집회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보호법익이 침해될 위험성이 작다. 예컨대 외국의 대사관 앞에서 소수의 참가자가 소음의 발생을 유발하지 않는 평화적인 피켓시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 대중의 합세로 인하여 대규모시위로 확대될 우려나 폭력시위로 변질될 위험이 없는 이상, 이러한 소규모의 평화적 집회의 금지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셋째, 예정된 집회가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행해지는 경우, 외교기관에의 자유로운 출입 및 원활한 업무의 보장 등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의 위험이 일반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다.

10. 비례의 원칙의 위반 여부(적극)

따라서 입법자가 '외교기관 인근에서의 집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도의 법익충돌위험이 있다'는 예측판단을 전제로 하여 이 장소에서의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수는 있으나, 일반·추상적인 범규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의 가능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일반적 금지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전제된 위험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함께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치의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반되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10. 집회신고의 접수 이후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보완통고는 접수증을 교부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 ② 보완통고에 따른 주최자의 보완기한은 발송된 때로부터 24시간이다.
- ③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통고할 수 없다.
- ④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보완 또는 금지통고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서면으로 주최자에게 통지한다.

정답 ①

해설

① (옳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신고서의 보완 등) 제1항

② (틀림) 보완 통고는 보완할 사항을 분명히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신고서의 보완 등) 제2항). 보완·금지·제한통고의 효력발생시점은 송달(도착) (↔ 발송(x))이다.

③ (틀림)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 제5조제1항(폭력 집회 시위), 제11조(금지장소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 ㉡ 신고서 기재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에 따라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

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제1항}.

- ④ (틀림)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제4항}. 즉 보완 또는 금지통고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가 필요 없다.

조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신고서의 보완 등)

-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 통고는 보완할 사항을 분명히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2.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기재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3. 제12조에 따라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21>
1.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④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1.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를 받았을 때 주최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관청과 기간이 바르게 연결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도지사 - 72시간 이내
- ② 관할 경찰관서장 - 10일 이내
- ③ 시·도지사 - 7일 이내
- ④ 직근상급 경찰관서의 장 - 10일 이내

정답 ④

해설 ④ (옳음)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9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 제1항}.

조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9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

-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8조에 따른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 신청인에게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관할경찰관서장의 금지 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 ③ 이의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금지 통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처음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12. 북한의 대남공작부서는 작금의 남한 내부 상황을 ‘해방 이후 최고의 대남침투 호기’로 판단하고 각종 공작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의 공작활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군사정보, 기밀 등을 수집하기 위한 ‘수집·정찰공작’ 전개
- ② 남북교류 공간을 이용하는 ‘회색공작’ 전개
- ③ 남한정부와 국민을 이간시키는 ‘심리전 공작’ 전개
- ④ 대중을 의식화시키고 배후조종하기 위한 세력을 양성하는 ‘지하당 구축공작’ 전개

정답 ②

해설 ② (틀림) 북한은 남북교류 공간을 이용하는 ‘**백색공작**’ (↔ 회색공작 (x)) 을 전개한다.

백색공작은 주체·출처 등을 밝히면서 공개적으로 행하는 공작활동의 한 방법이고, 회색공작은 출처를 밝히지 않고 행하는 공작활동이다.

정리 북한의 공작활동

1. 북한과 해외 남한을 연결하는 ‘통일전선공작’ 추진
2. 남한정부와 국민을 이간시키는 ‘심리전공작’ 전개
3. 대중을 의식화시키고 배후조종하기 위한 세력을 양성하는 ‘지하당 구축공작’ 전개
4. 남북교류 공간을 이용하는 ‘백색공작’ 전개
5. 군사정보, 기밀 등을 수집하기 위한 ‘수집·정찰공작’ 전개

13. 공산주의 이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산주의자들은 인류의 역사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간의 계급투쟁의 과정으로 이해한다.
- ② 계급투쟁론에서는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 간 적대관계는 성격상 화해가 불가능하며 오히려 계급 없는 사회가 완성될 때까지 투쟁, 혁명을 전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③ 계급투쟁론에 의하면 계급간의 투쟁은 사유재산제도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 ④ 공산주의자들은 국가의 이익이 계급의 이익에 우선하며, 계급의 해방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정답 ④

해설 ④ (틀림) 공산주의자들은 **계급의 이익이 국가의 이익에 우선**하며, 계급의 해방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정리 공산주의 철학이론 중 유물사관의 계급투쟁론

1. 인간사회는 유산·무산계급간에 항상 적대적 대립관계가 있었으며, 생산수단의 소유여부에 따른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의 투쟁은 불가피하다고 함.
2. 적대적 관계의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이 계급없는 사회가 완성될 때까지 투쟁을 확대해야 함 → 계급투쟁의 결과는 반드시 피착취계급인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승리하게 되어 있음.
3. 인간사회의 발전(인류의 역사)을 계급투쟁의 역사(↔ 진화론적 역사(X))로 봄.
4. 계급 간 투쟁은 사유재산제도에서 비롯됨 →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따르면 사유재산은 어떤 특수층이 생산수단을 소유하도록 허용되고,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층에게 그들의 의사를 강요하도록 하는 기능을 함.
5. 비판 : 오늘날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한 선진국의 사회계층구조는 중간계층이 튼튼한 다이아몬드형으로 발전되었고, 계급투쟁에 의해 반드시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음.

14. 우리정부와 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우리 정부가 제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3대 원칙은 자주, 평화, 민주이다.
- ② 우리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통일목표실현을 위해 과도적 통일체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남북연합이다.

- ③ 북한의 통일노선을 집약한 것은 유일사상 10대 원칙이다.
 ④ 북한은 1991년 김일성 신년사에서 기존의 통일완성형 연방제에서 변화한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시사하였다.

정답 ③

해설 ③ (틀림) 북한의 통일노선은 **조국통일 3대헌장론**으로 집약되었다. 조국통일 3대헌장론은 ㉠ 조국통일 3대 원칙, ㉡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다. "조국통일 3대헌장론"이란 말은 김정일이 1996년 11월 24일 판문점을 방문할 때 최초로 사용했다. 김정일이 1997년 8월 4일 발표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일명 8.4조작)라는 논문에서 이를 공식화하였다.

정리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고려민주연방공화국 방안(북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남한)
통일의 철학	주체사상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원칙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① 자주 : 반외세자주화(미군철수), 외세침략 · 간섭배제 ② 평화 : 대남혁명노선 고수, 군축 · 비핵평화지대화 실현 ③ 민족대단결 : 남한의 반공정책 포기, 공산당 합법화,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및 민족대단결 5대 방침 실현	자주, 평화, 민주 ① 자주 : 민족자결의 정신에 따라 남북 당사자 간 통일 ② 평화 : 무력에 의거하지 않고 대화와 협상으로 통일 ③ 민주 : 민주적 원칙에 입각한 절차와 방법으로 통일
성 격	공세적 연방제통일방안	점진적 · 단계적 통일방안 :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
통일형태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연방제 통일방안 → 느슨한 연방제 통일방안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 형태
통일과정	(1) 선결조건 : 남한 연방정부(민주정부로 대체),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북미평화협정 체결, 미군간섭 배제 등 (2) 연방정부 수립 = 중간과정이 없는 완성단계 = 통일 ① 사상과 제도는 그대로 두고 남북이 연합하여 연방국가를 형성하고, 연방정부는 정치 · 외교 · 군사권을 보유함. ② 연방정부는 ㉠ 최고민족연방회의(최고 주권기관, 남북동수, 해외동포 참여), ㉡ 연방상설위원회(상임기구)로 구성됨. ③ 연석회의 방식 정치협상('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으로 통일함.	당장의 통일보다는 교류협력과 신뢰회복을 통해 남북연합의 중간과정을 거쳐 통일국가 실현 (1) 화해협력 : 남북한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적대 · 대립관계를 공존공영의 관계로 바꾸어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함. (2) 남북연합 ① 궁극적으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를 지향하나 남북 간 체제의 차이와 이질성을 감안, 경제 · 사회 공동체를 형성 · 발전시키는 과도체제를 설정함. ②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고 제도화되는 단계임.
통일국가의 미래상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자주 중립, 평화애호적인 국가	자유, 복지, 인간존엄성이 구현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15.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등의 단체의 혁명노선인 NDR(민족민주주의혁명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한국사회를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평가하고 있다.
 ② 한국 사회에서의 미국을 민족적 억압자이자 최대의 계급적 침략자로 규정하고 先 미제축출, 後 현정권 타도를 외치고 있다.
 ③ 파쇼 대 민중 간 모순을 한국사회의 주요 모순으로 보고, 노동자 계급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편성하여 반동부르주아와 자유부르주아를 제외한 민중을 동맹세력으로 설정하고 있다.
 ④ 1단계로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하고, 2단계로 민중연합정권인 민주주의 민중공화국을 건설한 후 사회주의 혁명을 진행하는 전략이다.

정답 ③

해설 ① (틀림)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한국사회를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평가한 것은 **NL주사파**이다.
 ② (틀림) 한국 사회에서의 미국을 민족적 억압자이자 최대의 계급적 침략자로 규정하고 先 미제축출, 後 현정권 타도를 외치고 있는 것은 **NL주사파**이다.
 ④ (틀림) NDR파는 [1단계 NDR 완수] **먼저 현 정권 타도 후 미제 축출 → 임시정부 수립 → 민중연합정권인 민주**

주의 민중공화국 건설하고 [2단계 완수]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 후 본격적인 사회주의 혁명을 진행한다.
정리 NL주사파와 NDR파에 대한 기초설명

주체사상 추종	NL주사파	(1) 기본적으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세력. (2) '민족해방 민주민주주의혁명' : 북한의 대남혁명론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NLPDR, 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에 입각하여 남한의 공산화혁명을 성취하려는 세력임(주장내용에는 차이가 없음). (3) 주로 NL(민족해방)파, 주사파, NLPDR파, 친북운동세력 등으로 불리움. (4) 북한의 대남혁명론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론'을 그대로 수용함. (5) 노동자계급, 농민, 청년학생 및 진보적 지식인을 주력군으로, 각계각층의 민중을 보조역량으로 하여(반동관료 및 매관자본가는 제외) 통일전선을 형성함. (6) [1단계 NLPDR 완수] 먼저 미제축출 후 현 정권 타도 → 용공정권인 민족자주정권 수립. [2단계 완수] 북한과 연방제 통일 후 '사적소유 철폐와 프롤레타리아 독재 권력 수립을 내용으로 하는 본격적인 사회주의 혁명을 진행한다.' (7) 형성시기 : 1985년 7월 27일 북한의 대남혁명전위조직인 「한국민족민주전선」(약칭 : 한민전, 통혁당의 후신)의 출범과 맥락을 같이 함. (8) 학습방법 : '평양방송' 및 「한민전」에서 운영하는 대남흑색방송인 '구국의 소리방송'의 소위 운동강좌(김일성방송 대학 강좌, 주체사상교양 강좌, 정치철학 강좌 등)를 직접 녹취하여 주체사상 및 북한의 남조선 혁명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기 시작함. (9) 북한방송 청취내용을 수록한 지하간행물을 제작, 배포하여 주체사상과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을 급속히 확산시켜 오늘의 소위 '주사파'라는 친북운동세력을 형성하게 된 것. (10) 3대 투쟁목표 :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	
마르크스·레닌주의 추종	NDR파	(1) 민족민주혁명파를 지칭함. (2) 소위 NDR론에 의해 한국사회를 공산화시키려고 획책하는 세력. (3) 레닌의 혁명론을 원용함. (4) 노동자계급만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편성함 → 민중을 동맹세력으로 설정함(반동부르주아와 자유부르주아는 제외). (5) [1단계 NDR 완수] 먼저 현 정권 타도 후 미제 축출 → 임시정부 수립 → 민중연합정권인 민주주의 민중공화국 건설. [2단계 완수]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 후 본격적인 사회주의 혁명을 진행한다. (6)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의 유물사관에 입각하고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 혁명론임을 자처함.	
		제독 PDR	(1) 한국사회모순 : 제국주의·독점자본과 한국 민중간의 모순 (2) 혁명성격 : 반제반독점 민주민주주의 혁명론 (3) 전략목표 : 제국주의와 독점자본을 동시에 타도
	PDR파	제파 PDR	(1) 한국사회모순 : 파쇼와 민중간의 모순 (2) 혁명성격 : 반제반파쇼 민주민주주의 혁명론 (3) 현정권 타도 후 제국주의 축출

16. 방첩활동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전복, 간첩, 태업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복(顛覆)이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변혁시키거나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피지배자가 지배자를 타도하여 정권을 탈취하는 것을 국가전복이라 한다.
- ② 간첩을 임무(사명)에 의해 분류하면 일반간첩, 고정간첩, 증원간첩, 보급간첩으로 나눌 수 있다.
- ③ 태업의 형태로 물리적 태업과 심리적 태업이 있다. 물리적 태업은 방화태업, 폭파태업, 기계태업으로 분류되는데 이중 폭파태업이 가장 파괴력이 강하고 우연한 사고로 위장이 용이하다.
- ④ 간첩망의 형태로 삼각형, 써클형, 단일형, 피라미드형, 레포형이 있는데 지하당 구축에 많이 사용되는 형태가 써클형이다.

정답 ①

- 해설 ① (옳음) 전복이란 위헌적인 방법으로 국가를 변혁하여 국가기능을 소멸시키거나 정권을 타도하여 탈취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그 형태는 국가전복과 정부전복이 있다. 국가전복은 피지배자가 지배자를 타도하여 정권을 탈취하는 것이고, 정부전복은 동일지배계급 내의 일부세력이 집권세력을 제압,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다.
- ② (틀림) 간첩을 임무(사명)에 의해 분류하면 일반간첩, **무장간첩**(↔ 고정간첩(x)), 증원간첩, 보급간첩으로 나눌 수 있다.

간첩을 활동방법에 의해 분류하면 고정간첩, 배회간첩, 공행간첩으로 나눌 수 있다.

③ (틀림) 태업의 형태로 물리적 태업과 심리적 태업이 있다. 물리적 태업은 방화태업, 폭파태업, 기계태업으로 분류되는데 이중 **방화태업**(↔ 폭파태업(X))이 가장 파괴력이 강하고 유연한 사고로 위장이 용이하다. 그리고 폭파태업은 파괴가 전체적이고 즉각적이어야 할 때 주로 사용한다. 기계태업은 범행이 용이하며 사용자가 사전에 결함 발견이 곤란하다.

④ (틀림) 간첩망의 형태로 삼각형, 써클형, 단일형, 피라미드형, 레포형이 있는데 지하당 구축에 많이 사용되는 형태가 **삼각형**(↔ 써클형(X))이다. 써클형은 현대 첩보전에서 많이 이용된다.

정리 태업의 형태

물리적 태업	방화태업	(1) 성냥·유류 등 인화물질로 목표물에 화재를 발생케 하는 태업방법 (2) 특징 ① 물리적 태업 중에서 가장 파괴력이 강한 태업방법 ② 우연한 사고로 위장하기 쉬운 태업방법 ③ 어떤 목표에 대해서도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음. ④ 인화물질의 습득이 용이함.
	폭파태업	(1) TNT·다이ना이트 등 폭발물을 사용하여 목표물을 파괴하는 태업방법 (2) 사용시기 ① 파괴가 전체적이고 즉각적이어야 할 때, ② 목표물을 파괴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강한 절단력, 분쇄력을 필요로 할 때 주로 사용함.
	기계태업	(1) 기계·기구에 손상을 가하거나 조작하여 큰 파괴를 유발시키는 태업방법 예 열차탈선·전복·충돌, 철물·황산·설탕물 등의 기계투입 (2) 특징 ① 범행이 용이함. ② 사용자가 사전에 결함을 발견하기 어려워 성공도가 높음. ③ 특별한 도구나 수단이 필요 없음. ④ 사전에 결함이 용이하게 발견되지 않음.
심리적 태업	선전태업	허위사실 또는 유언비어의 유포, 반정부 선동 등으로 민심을 혼란시키고 사회불안을 일으켜 전쟁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태업
	경제태업	위조통화·증권의 유통, 대규모 부도사태 촉발, 악성 노동쟁의행위 확산 등 대상국의 경제질서를 혼란 또는 마비시키는 태업
	정치태업	정치적 갈등과 분열을 일으켜 국민적 불신과 불화를 조장하고 일체성을 파괴하는 태업

정리 간첩의 분류

특수한 대상의 지목 여부	대량형 간첩	(1) 특수한 대상의 지목도 없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정보를 입수하는 사람들. (2) 국가에 위해가 적으며 수적으로 대량이므로 검거될 위험이 크며, 지명령 간첩을 보호하기 위하여 파견되는 수도 있음. (3) 주로 전시에(↔ 평시에(X)) 파견되고 상대국가 색출하기가 용이함.
	지명형 간첩	(1) 필요한 비밀활동 및 공작기술에 관한 교육을 받고 어떠한 특정목표와 임무를 부여받아 특수한 중요정보를 수집토록 개별적으로 지명하여 파견되는 사람. (2) 국가에 끼치는 위험도 크고, 또한 고정간첩으로 합법신분을 보장받는 경우가 많음. (3) 전쟁시를 불문하고 파견되며, 색출이 곤란함.
임무(사명) 기준	일반간첩	(1) 통상의 간첩 (2) 일반적인 첩보를 수집하거나 또는 태업공작이나 전복공작을 전개하는 간첩 (3) 기밀 탐지·수집 등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간첩 (4) 우리나라에 잠입한 대부분의 간첩은 일반간첩에 속함.
	무장간첩	(1) 요인암살, 납파간첩의 호송, 월북안내, 연락 및 납파루트의 개척을 주된 임무로 하는 무장한 간첩 (2) 부차적 사명 : 전방 휴전선 일대의 군사정보 수집의 사명 (3) 단기간공작으로 납내 요인암살과 사회질서를 혼란시키기 위하여 소대단위 또는 중대단위로 침투하는 경우도 있음.
	증원간첩	북한은 대남공작에 많은 간첩을 소모한 후 공작원의 인적 자원이 고갈되자 납파간첩들의 연고자, 불평불만자, 실업자, 불량배, 무직자 등을 유인하여 월북시키거나 어부, 군인 등을 입북하여 간첩교육을 시켜 다시 간첩으로 납파시키는 경우
	보급간첩	납파간첩의 공작활동에 필요한 공작금품, 장비, 증명서 원본 등 물적 지원의 사명을 띠고 납파되는 간첩.

활동 방법 기준	고정간첩	개 념	일정한 지역 내에서 영구적으로 간첩행위를 하도록 임무를 부여받고, 활동을 하는 간첩
		특 징	(1) 일정한 공작기간이 없음. (2) 활동영역이 넓음. (3) 일정지역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함. (4) 합법적으로 보장된 신분이나 보장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음.
	배회간첩	개 념	고정간첩에 반대되는 간첩으로서 일정한 주거 없이 전국을 배회하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간첩
		특 징	(1) 배회활동 중 합법적인 신분을 획득하면 고정간첩으로 변할 수 있음. (2) 일정한 공작기간이 설정되어 있음.
	공행간첩	개 념	타국에 공용의 명목 하에 입국하여 합법적인 신분을 갖고 이를 기화로 상대국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첩
		특 징	대상국가에 입국할 때 합법적인 신분을 보장받고 있음.

정리 간첩망의 형태

간첩망	간첩이 대상국에 침투하여 간첩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공작원을 포섭하고 지하당을 조직하는 형태.	
삼각형	개 념	간첩이 3명 이내의 행동공작원을 포섭하여 지하당을 구축하고 직접 지휘하며, 포섭된 공작원간 횡적 연락을 차단시키는 활동조직
	장 점	(1) 주로 지하당 구축에 많이 사용됨. (2) 비교적 보안유지가 잘되고 일망타진의 가능성이 적음(← 행동공작원 포섭을 3명 이내로 제한하는 이유)
	단 점	활동범위가 좁고 행동공작원이 검거됐을 때 주공작원 정체가 쉽게 노출
서클형 (동아리형)	개 념	간첩자신이 합법적인 신분을 이용하여 간첩망을 조직하여 운영하기도 하고, 또는 그 조직체의 주요 핵심 '멤버'를 인 간적·물질적으로 강한 유대로 인간관계를 결속시켜 놓고, 간첩의 주의나 사상에 동조하고 호응하게끔 하는 조직을 가진 간첩망.
	장 점	(1) 현대 첩보전(전선조직)에서 가장 많이 이용됨. (2) 간첩활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대중적 조직을 할 수 있고 동원이 용이함.
	단 점	간첩의 정체가 폭로되었을 때 외교적 문제로 국제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큼.
단일형	개 념	(1) 장기간 잠복하면서 간첩활동도 중지하고 필요한 인간관계의 형성 또는 합법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은신하다가 결정적인 시기에 부여된 특수목적을 수행하는 간첩망 (2) '점'활동형태 (3) 현재 대남 간첩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음. (4) 대남 간첩으로 머무르고 있는 동안 간첩 상호간의 종적 또는 정적으로 개별적인 연락을 일체 회피하는 간첩망 형태
	장 점	(1) 동조자를 포섭하지 않고 단독으로 활동하는 점조직 (2) 보안이 유지되고 신속한 활동을 할 수 있음
	단 점	활동의 범주가 좁고 공작성고가 비교적 낮음.
피라미드형	개 념	(1) 간첩이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그 밑에 각각 2~3명의 행동공작원을 두는 간첩망 (2) 일망타진 특히, 전체 조직의 노출가능성이 크므로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음. (3) 전선조직을 형성하거나 세포 망을 확장시키는 데는 이 간첩망에 의존하는데 이때에는 주의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장 점	(1) 활동범위가 넓고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2) 구성원 상호간 최소한의 정체를 보장받을 수 있음
	단 점	(1) 활동이 노출되기 쉬움 (2) 일망타진 가능성이 있음 (3) 조직구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레포형	(1) 피라미드형 조직에 있어서 간첩과 주공작원간, 행동공작원 상호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연결하는 방식의 간첩망. (2) '레포'란 연락 또는 연락원을 뜻하는 공산당용어. (3)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음	

17. 비밀공작을 수행하면서 첩보, 문서, 관념, 물자를 전달하기 위하여 강구된 수단과 방법의 유지 및 운용을 말하는 **연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연락의 3대 요소로는 안전성, 정확성, 신속성을 들 수 있다.
 ② 연락선이란 변동하는 각종 상황하에서 조직 내의 인원이나 기관 사이에 연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정상선, 예비선, 비상선이 있다.
 ③ 정상선은 정상적인 공작상황하의 연락선으로 기본선, 보조선, 긴급선이 있다.
 ④ 예비선은 공작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위급한 상황하의 연락선으로 경고선이라고도 한다.

정답 ④

해설 ④ (틀림) **비상선**(↔ 예비선(x))예비선은 공작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위급한 상황하의 연락선으로 경고선이라고도 한다. 예비선이란 조직원의 교체 또는 조직의 확장, 부활 및 변동 시에 대비하여 서로 알지 못하는 조직원 간의 최초 접촉을 위해 조직하는 것이다.

정리 **연락의 의의**

연락의 개념	(1) 비밀공작 수행시 상·하급 인원이나 기관간에 비밀을 은폐하려고 기도하는 방법 (2) 첩보, 관념, 문서와 물자 등을 전달하기 위하여 설치한 수단방법의 유지운용을 의미함. → 연락유지 방법은 비밀활동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		
연락의 3대요소	(1) 정확성 (2) 신속성 (3) 안전성 : 가장과 은폐, 차단의 수단이 필요함.		
연락선	개 념	(1) 변동하는 각종 상황하에서도 비밀조직 내의 인원이나 기관간에 상호연락 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구성하는 것. (2) 공작진행과정에 야기되는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상급기관과 현지공작원 또는 공작원과 하급공작원 사이의 연락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선을 확립하는 것. → 비밀연락선이라고도 함	
	종 류	정상선	정상적인 공작상황하에서 지령, 첩보, 문서 등 통신물을 전달하기 위하여 조직한 접촉수단으로서의 연락선 → 이를 전형화 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의 선을 불규칙적으로 병행 사용함.
			기본선 (1) 정기적 접촉을 목적인 최초의 선 (2) 가장 안전한 상태하에서 이루어지므로 통상 개인회합과 같은 연락수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보조선 (1) 기본선의 과중한 사용을 피할 목적이거나 기본선의 사고 발생 시를 대비하여 기본선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직된 연락선. (2) 기본선과 교체로 사용하게 됨. (3) 수수소와 같은 연락수단을 이용하게 됨.
			긴급선 시간적으로 긴급한 지령이나 첩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기본선과 보조선을 이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의 연락을 위하여 조직하는 것 → 전화 및 전보와 같은 연락수단을 이용하게 됨.
			예비선 (1) 조직원의 교체 또는 조직의 확장·부활·변동 등을 대비하여 상호 알지 못하는 조직원 사이에 최초의 접촉을 위하여 조직한 것 (2) 예비선을 통하여 신입공작관이나 상급기관의 피지명인(새로운 망원)이 기성조직망과 접촉시 자기의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게 됨.
	비상선 (경고선) (1) 공작활동을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위급한 상황하에서 공작의 중단 또는 정지를 알리기 위하여 조직되는 선 → 신속해야 하고 언제든지 사용가능해야 하며, 필요한 인원이 전부 알고 있어야 함. (2) 모든 공작원은 즉시 공작을 중단하고 망원들을 분산하여 안전가옥에 잠복하거나, 국외로 도피하여야 함 → 다시 공작을 재개할 경우에는 예비선에 의한 재접촉을 가진 후 정상선을 재조직하게 됨.		

18. 선전은 특정집단을 자극하여 감정이나 견해 등을 자기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계획된 심리전의 일종으로 출처의 공개여부에 따라 백색선전, 회색선전, 흑색선전으로 구분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백색선전은 출처를 밝히고 하는 선전으로 북한의 대남혁명전위대인 한국민주선전에서 운영한 '구국의 소리 방송'이 대표적인 예이다.
 ② 회색선전은 출처를 밝히지 않고 행하는 선전으로 적이 회색선전이라는 것을 감지하여 역선전을 할 경우 대항이 어렵고 출처를 은폐하면서 선전의 효과를 거두기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③ 흑색선전은 출처를 위장하여 행하는 선전으로 출처노출을 피하기 위해 많은 주의가 요구되며, 정상적인 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④ 선전의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은 백색선전이며, 특정한 목표에 대해 즉각적이고 집중적인 선전을 할 수 있는 것은 흑색선

전이다.

정답 ①
해설

① (틀림) 백색선전은 출처를 밝히고 하는 선전으로 이를 분석함으로써 적의 의도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흑색선전은 출처를 위장하여 행하는 선전으로 북한의 대남혁명전위대인 한국민주선전에서 운영한 '구국의 소리 방송'이 대표적인 예이다.

정리 선전

개 념	특정 집단의 심리적 작용을 자극하여 감정이나 견해 등을 자기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특정한 주장과 지식 등을 전파하는 심리전의 기술		
분 류 (출처의 공개 여부를 기준)	백색 선전	개 념	주체·출처 등을 밝히면서 공개적으로 행하는 선전활동의 한 방법.
		특 징	(1) 국가 또는 공인된 기관이 공식보도기관을 통해 행하므로 주체·출처 등을 밝히지 않고 행하는 회색·흑색선전에 비해 진실성과 신빙성이 높음 (2) 공식보도의 형식을 취하는 만큼 국가의 위신·입장을 고려함. (3) 적의 의도를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는 자료가 됨 → 의도적인 기만선전 여부를 분석하면 적의 의도를 판단할 수 있음.
	회색 선전	개 념	(1) 출처를 밝히지 않고 행하는 선전 (2) 단지 출처만 밝히지 않는 점에서 출처를 위장하는 흑색선전과 구별됨.
		장 점	(1) 기술적으로 운용을 잘하면 선전이라는 선입관을 주지 않고 효과를 얻을 수 있음. (2) 선전주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위신에 관계없이 호응자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주체·내용을 활용할 수 있음.
		단 점	(1) 적이 회색선전이라는 것을 감지하여 역선전을 할 경우 대항이 어려움. (2) 출처를 은폐하면서 신비스럽고 권위있게 선전의 효과를 거두기가 곤란함.
	흑색 선전	개 념	(1) 주체·출처를 위장하여 암암리에 행하는 선전(예 북한의 '구국의 소리방송') (2) 백색선전과 반대되는 개념임.
		장 점	(1) 출처를 밝히지 않는 위장선전이기에 때문에 적국 내에서도 행할 수 있고, 특정한 목표에 대해 즉각적이고 집중적인 선전을 할 수 있음. (2) 적으로 하여금 그 내부에 모순이 있음을 드러내어 사기를 저하시킴 → 용어·형식 등을 적국내의 백색선전인 양 위장함으로써 전국민을 현혹시킬 수 있음. (3) 선전내용을 임의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처확인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역선전도 효과를 거두기 어려움.
		단 점	(1) 출처 노출을 피하기 위해 많은 주의가 요구됨. (2) 정상적인 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음. (3) 적진에서는 노출될 위험이 큼.

19. 「국가보안법」 제3조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국가보안법 위반의 가장 기본적인 범죄유형으로 기존의 반국가단체 구성원은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② 주체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외국인을 막론하며, 구성, 가입, 가입권유의 미수범과 구성, 가입의 예비·음모를 처벌한다.
- ③ 구성죄와 가입죄는 일정한 시간적 계속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
- ④ 실체에 있어 반국가단체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이나 활동을 한 자를 '수괴'라고 하며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정답 ②
해설

① (틀림) 『국가보안법』 위반의 가장 기본적인 범죄유형으로 누구든지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기존의 반국가단체 구성원도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북한 노동당에 가입한 사람이 남파되어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에 가입하였다면 북한 노동당에 가입한 행위도 반국가단체의 가입죄가 성립되지만 남파되어 사노맹에 가입한 행위 또한 별도의 반국가단체 가입죄가 성립한다.

② (옳음) 주체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누구든지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제1항}, 가입권유(같은 조 제2항)의 미수범(같은 조 제3항)과 구성, 가입의 예비·음모(같은 조 제4항)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은 조 제4항, 제5항)를 처벌한다.

③ (틀림) 반국가단체 구성죄와 가입죄는 일정한 시간적 계속을 필요로 하지 않고 행위가 완료되면 바로 범죄가 완성되어 기수가 되는 즉시범이다[판례(대판 1960.04.05, 4293형상57), 통설].

④ (틀림) 국가보안법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라 함은, 당해 반국가단체 내에 있어서의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실제로 있어서 당해 반국가단체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 또는 지도적 활동을 한 자를 말하므로, 자기의 지시를 따르는 하부조직의 유무는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였는지의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다(대판 1995.07.25, 95도1148[국가보안법위반]; 대판 1983.6.14, 83도647).

반국가단체 구성이나 구성 후 목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지휘·통솔하는 최고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를 '수괴'라고 하며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제1항 제1호].

조문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①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판례 대법원 1960.04.05. 선고 4293형상57 판결[국가보안법위반]

구 국가보안법(48.12.1. 법률 제10호) 제1조 제3호의 「가입죄」는 계속범이 아니고 그 가입절차완료로서 동 범죄행위는 종료되고 전형적 계속범인 체포감금죄에 있어서와 같이 다소 어느 정도 범행상태의 시간적 계속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일종의 즉시범에 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정리 반국가단체의 구성·가입·가입권유죄(「국가보안법」 제3조)

의 의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거나 타인에게 가입할 것을 권유함으로써 성립함.
요 건	주 체	누구든지(내·외국인, 기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도) 가능함.
	구 성	2인 이상이 의사합치에 의하여 단체를 창설하는 것 ↔ 회칙, 결성식, 대표선출 등 별도의 형식이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가 입	(1) 기존의 반국가단체의 새로운 구성원이 되는 것 (2) 가입방법이나 절차는 반국가단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어떤 방법·절차를 취하든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 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입절차가 완료되면 본죄는 성립함.
	행 위	(1) 가입권유란 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것 → 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새롭게 결의하게 하거나, 기존의 가입의사를 더욱 확고하게 하는 것. (2) 권유의 수단·방법 : 제한없음.
	가 입 권 유	(3) 대상 : 특정한 타인 ↔ 신문·방송·벽보 등으로 불특정인에게 권유하는 것은 가입권유가 아니고 선동 또는 선전에 해당한 뿐임. (4) 범죄성립 : 피권유자가 실제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독립적으로 범죄가 성립함(↔ 형법상 정범의 실행행위를 전제로 하는 교사범과 다름) → 피권유자가 권유에 따라 실제로 가입한 경우라도 가입권유죄가 성립할 뿐 교사죄는 성립하지 않음.
주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1) 행위시에 반국가단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 과실로 인식 못한 경우는 불벌) (2) 반국가단체의 구성·가입·가입권유에 대한 고의가 있을 것(↔ 납북 등에 의한 강요된 행위는 불벌)
	처벌	(1) 행위자의 지위와 관여한 정도에 따라 형벌의 차등을 둠. (2)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함. →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 : 반국가단체의 구성이나 목적수행을 위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이를 총지휘, 통솔하는 최고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 (3)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 간부 : 수괴를 보좌하여 단체의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휘하는 자 → 지도적 임무를 종사한 자 : 지위여하를 불문하고 실제로 있어서 단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이나 활동을 한 자 (4)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20. 「국가보안법」 상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을 때 적용되는 감경, 면제에 대한 규정을 기술한 것이다. 연결이 잘못된 것은?

- ① 무고·날조죄 →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 ② 단순편의제공죄 → 임의적 감경 또는 면제
- ③ 불고지죄 →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 ④ 특수직무유기죄 → 임의적 감경 또는 면제

정답 ①

해설 ① (틀림) 『국가보안법』 제12조 무고·날조죄에는 본범과 친족관계시 적용되는 감경·면제규정이 없다.

② (옳음) 「국가보안법」 제9조(편의제공) 제2항 단서

③ (옳음) 「국가보안법」 제10조(불고지) 단서

④ (옳음) 「국가보안법」 제11조(특수직무유기) 단서

조문 「국가보안법」

제9조(편의제공)

- ① 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탄약·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 ② 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회합·통신·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1.5.31>
-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④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⑤ 삭제 <1991.5.31>

제10조(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전문개정 1991.5.31]

제11조(특수직무유기)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무고, 날조)

-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 ②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정리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감면사유

필요적 감면	(1) 불고지죄(제10조) (2) 자수할 때(16조) (3) 국가보안법상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제16조)
임의적 감면	(1) 단순편의제공죄(재산상 이익과 장소의 제공, 기타 방법에 의한 경우)(제9조 제2항) (2) 특수직무유기죄(제11조)

21. 보안관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형법상 국가존립에 관한 범죄 중 내란죄(제87조), 일반이적죄(제99조),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제103조)는 보안관찰 해당범죄가 아니다.
- ②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를 말하며,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 ③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출소 2개월 전까지 교도소등의 장을 경유, 거주예정지 경찰서장에게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대상자가 출소 후 거주예정지에 거주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교도소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 등에서 출소 후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해설

- ④
① (옳음) 「보안관찰법」 제2조(보안관찰해당범죄)
② (옳음) 「보안관찰법」 제3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제5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 제1항
③ (옳음) 「보안관찰법」 제6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 제3항
④ (틀림)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 등에서 출소 후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 「보안관찰법」 제6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 제1항},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7일(↔ 3일(x))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조문

「보안관찰법」

제2조(보안관찰해당범죄) 이 법에서 "보안관찰해당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88조·제89조(제87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제90조(제87조에 해당하는 죄를 제외한다)·제92조 내지 제98조·제100조(제99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 및 제101조(제99조에 해당하는 죄를 제외한다)
2.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제9조제2항 및 제11조 내지 제16조
3.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제1항중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조, 제9조제1항·제3항(제2항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제4항

제3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 법에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급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5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

- ①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 ②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6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

-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군교도소 또는 영창(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 에서 출소전에 거주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교도소등의 장을 경유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소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제공하는 거주할 장소(이하 "거소"라 한다)를 거주예정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변동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의하여 거소제공을 받은 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경찰서장에게 제18조제4항 단서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교도소등의 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가 생길 때에는 지체없이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와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조문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5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

- ①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② 영 제6조제1항의 교도소등의 장(이하 "교도소등의 장"이라 한다)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신고서 중 1부를 국가안전기획부장에게 송부하고 1부는 보존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 송부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③ 교도소등의 장은 제2항 및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송부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출소예정일 2월전까지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④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송부받은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출소 후 거주 예정지에 거주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교도소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교도소등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교도소등의 소재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송부받은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접수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⑦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의 송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정리

보안관찰해당범죄

	보안관찰해당범죄(○)	보안관찰해당범죄(×)
형 법	내란목적살인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과	내란죄, 일반이적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형법

	괴이적죄, 물건제공이적죄, 간첩죄	제103조)
군형법	반란죄, 반란목적의 군용물탈취죄, 반란불보고죄, 군대 및 군용시설제공죄, 군용시설 등 파괴죄, 간첩죄, 일반이적죄	단순반란불보고죄
국가보안법	목적수행죄, 자진지원·금품수수죄, 잠입·탈출죄, 편의제공죄	반국가단체구성죄, 찬양·고무죄, 회합통신죄, 불고지죄

2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 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 ③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없어야 한다.
- ④ 협력사업을 하려는 분야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기술·경험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정답 ②

해설

① (옳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제1항

② (틀림), ③ (옳음)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마다 ㉠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 협력사업으로 인하여 남한과 북한 간에 분쟁을 일으킬 사유가 없을 것, ㉢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없을 것, ㉣ 협력사업을 하려는 분야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기술·경험 등을 갖추고 있을 것, ㉤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없을 것을 모두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 사전 신고(x))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 제1항 본문, 제1호, 제5호}.

④ (옳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 제1항 제4호

조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방문 목적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제1항의 접촉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다.
-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접촉신고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제출 등 조건을 붙이거나, 3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 ⑤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

- ①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2. 협력사업으로 인하여 남한과 북한 간에 분쟁을 일으킬 사유가 없을 것
3.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없을 것
4. 협력사업을 하려는 분야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기술·경험 등을 갖추고 있을 것
5.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없을 것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협력사업의 승인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승인을 하려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범위 등 조건을 붙이거나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4.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협력사업 정지기간 중에 협력사업을 한 경우
 6.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8.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9.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협력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10. 협력사업의 시행 중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11.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 ⑤ 통일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 협력사업 정지, 승인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1.30]

2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요청이 있는 경우, 보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 ② 위장탈출 혐의자
 - ③ 체류국(滯留國)에 5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
 - ④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 정답 ③
- 해설 ① (옳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제1항 제2호
 ② (옳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제1항 제3호
 ③ (틀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요청이 있는 경우,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체류국(滯留國)에 10년(↔ 5년(x))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제1항 제4호).
 ④ (옳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제1항 제5호
- 조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 ①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 혐의자
 4. 체류국(滯留國)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
 5.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6. 그 밖에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제1항제4호의 경우 체류국이나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1조·제13조·제14조·제19조·제19조의2·제22조 및 제26조의2에 따른 보호 및 특별
 2. 그 밖에 사회정착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 및 지원
 - ④ 제3항에 따른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3.26]

24. 국제질서에 대한 사상들의 변천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유방임주의→제국주의→경제패권주의→이데올로기적 패권주의
 ② 이데올로기적 패권주의→자유방임주의→제국주의→경제패권주의
 ③ 제국주의→자유방임주의→이데올로기적 패권주의→경제패권주의
 ④ 자유방임주의→제국주의→이데올로기적 패권주의→경제패권주의

정답 ④

해설 ④ (옳음) 국제질서에 대한 사상들의 변천은 “자유방임주의(19세기)→제국주의(19세기말)→이데올로기적 패권주의(제2차대전 이후)→경제패권주의(1980년 이후)”의 순으로 전개되었다.

정리 국제질서에 대한 사상들의 변천사

이상주의(18세기)	국가도 국제관계의 이익에 봉사(이익의 조화) : 국가도 이상적인 존재로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구현할 수 있다는 사상.
자유방임주의(19세기)	전세계적 자유무역 주장 : 국제관계도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에 의해 세계적 이익에 기여하게 됨.
제국주의(19세기말)	자유주의에서 보호무역주의로, 민족주의에서 제국주의로 변질됨. 열강들의 식민지 쟁탈전(이익의 충돌)
이데올로기적 패권주의(2차대전 이후)	자유주의(미국)와 공산주의(소련)의 이데올로기 대립
경제패권주의(1980년 이후)	냉전종식, WTO체제, 자국의 경제적 이익 추구 : 무한경쟁시대의 도래.

25.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의 활동상 한계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제형사경찰기구는 (), (), (), () 성격을 띤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간섭이나 활동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 ① 경제적
 ② 군사적
 ③ 인종적
 ④ 종교적

정답 ①

해설 ① (틀림) 인터폴 회원국 간에는 정치, 군사, 종교 및 인종적(↔ 경제적(x))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여나 활동도 금지하고 있다(인터폴헌장 제3조).

26.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의 공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어, 일어, 중국어, 한국어
 ② 영어, 불어, 스페인어, 아랍어
 ③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④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정답 ②

해설 ② (옳음)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INTERPOL)의 공용어는 영어, 불어, 스페인어, 아랍어이다.

27. 일반귀화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자신의 자산인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③ 3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④ 품행이 단정할 것

정답 ③

해설 ③ (틀림)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간이귀화 요건 이나 특별귀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 5년(↔ 3년(x))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대한민국의 「민법」 상 성년일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 ㉔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㉕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국적법」 제5조(일반귀화 요건)}.

조문

「국적법」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전문개정 2008.3.14]

28. 사증 없이도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 ②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③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④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이 필요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정답

④

해설

① (옳음) 「출입국관리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 제2항 제2호

② (옳음) 「출입국관리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 제2항 제4호

③ (옳음) 「출입국관리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 제2항 제1호

④ (틀림) 법무부장관(↔ 외교부장관(x))이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조(국제친선 등을 위한 입국허가) 제1항 제3호}.

조문

「출입국관리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

- ①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3.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③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증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 ④ 대한민국과 수교(修交)하지 아니한 국가나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의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나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발급한 외국인입국허가서를 가지고 입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5.14]

조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조(국제친선 등을 위한 입국허가)

- ①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입국하려는 사람
 2.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한민국을 관광하거나 통과할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사람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의 입국허가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1]

① 평등주의 ② 상호주의
③ 대응주의 ④ 제한주의

상호주의는 외국이 그 외국에 있는 자국민에게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권리의무를 자국에 있는 외국인에게 인정하는 주의를 말한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법적 지위에 대한 제견해	(1) 상호주의 : 외국이 그 외국에 있는 자국민에게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권리·의무를 자국에 있는 외국인에게 인정하는 주의
	(2) 평등주의 : 자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자국민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인정하는 주의
	(3) 우리나라의 경우 : 헌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평등주의에 따르고 있음(통설)

30. 외교사절과 영사제도에 대한 구별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외교사절은 외교교섭이 가능하다, 영사는 외교교섭이 불가능하다.
 ② 외교사절은 포괄적 특권이 인정되나, 영사는 제한적 특권이 인정된다.
 ③ 영사는 아그레망을 요하나, 외교사절은 아그레망이 필요하지 않다.
 ④ 영사는 주로 통상·산업·교통·항해 기타의 국가 경제적 목적과 임명국 국민보호 업무를 수행 하나, 외교사절은 정치적 목적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리 외교사절과 영사의 비교

구 분	외교사절	영 사
성 질	정치적 기관(정치목적)	통상기관(기능적 성격)
외교교섭	가능	불가능
국 적	자국민 → 접수국민이나 제3국민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접수국의 동의를 요함	자국민일 필요 없음
아그레망	필요	불요
임무개시	신임장의 제출	위임장의 제출
공 관	외교공관은 통상 접수국의 수도에 한 곳 뿐임	영사관은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음

과건국이나 접수국의 원수 변경시 직무종료 여부	직무종료사유가 됨	종료하지 않음
과건·접수·직무·특권의 규제	일반국제법(국제관습, 협약)	개별적 조약(통상항해조약, 영사조약 등)
신체의 불가침	포괄적(안전을 위한 일시적 구속가능)	공무에 한해서
공관의 불가침	포괄적(공·사저)	공관만 향유(추후 보상을 전제로 징발가능)
문서의 불가침	포괄적(공·사문서)	공문서만 보호(영사직원의 입회하에 개봉 요구가능)
면제권	포괄적 향유	공무상 행위만 해당

31. 다문화사회의 접근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문화주의는 ‘차이에 대한 권리’로 해석되며, 다문화주의는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와 결부되어 이해된다. 그리고 소수집단이 자결의 원칙을 내세워 문화적 공존을 넘어서는 소수민족 집단만의 공동체 건설을 지향한다. 다민족 다문화사회에서 주류 사회의 문화, 언어, 규범, 가치, 생활양식을 부정하고 독자적인 생활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으로, 미국에서의 흑인과 원주민에 의한 격리주의 운동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① 동화주의 ② 급진적 다문화주의
③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 ④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정답 ②

해설 ① (틀림) 동화주의(assimilationism)는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라고도 한다.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참여를 위해 기회평등을 보장하며 다수민족과 소수민족 간의 차별구조와 불평등 구조를 적극적으로 해체할 것을 주장하나, 정치적 자결권 부여로 해석하지는 않는다.

② (옳음) 위 설문은 급진적 다문화주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③ (틀림)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는 '다원주의'라고도 한다.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는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와 급진적 다문화주의의 절충적 형태이다. 문화적 소수자가 현실적으로 문화적 다수자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소수집단의 사회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적·법적 원조를 하여 다문화주의를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정리 다문화사회 접근유형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	(1) 동화주의(assimilationism)라고도 함. (2)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참여를 위해 기회평등을 보장하며 다수민족과 소수민족 간의 차별구조와 불평등 구조를 적극적으로 해체함(↔ 정치적 자결권 부여(×)). (3) 다문화주의를 소수인종과 문화적 소수자에 대한 기회평등이라는 측면에서 다문화정책을 접근함. (4) 사회통합을 이룩하기 위해 국민국가 내부의 문화적 다양성을 허용함. (5) 소수 인종 집단 고유의 문화와 가치를 인정함. (6) 시민생활이나 공적 생활에서는 주류 사회의 문화, 언어, 사회습관에 따를 것을 요구함.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 (corporate multicultural)	(1) 다원주의라고도 함. (2)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와 급진적 다문화주의의 절충적 형태 (3) 전제 : 문화적 소수자가 현실적으로 문화적 다수자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음. (4) 소수집단의 사회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적·법적 원조를 함. (5) 다문화주의를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 (6) 다언어방송, 다언어의사소통, 다언어문서, 다언어 및 다문화 교육 등을 추진하고, 사적 영역에서 소수민족 학교나 공공단체에 대해 지원하기도 함.
급진적 다문화주의	(1) '차이에 대한 권리'로 해석됨. (2) 다문화주의는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와 결부되어 이해됨. (3) 소수집단이 자결의 원칙을 내세워 문화적 공존을 넘어서는 소수민족 집단만의 공동체 건설을 지향함. (4) 다민족 다문화사회에서 주류 사회의 문화, 언어, 규범, 가치, 생활양식을 부정하고 독자적인 생활방식을 추구하는 것. (5) 대표적인 사례 : 미국에서의 흑인과 원주민에 의한 격리주의 운동, 아프리카의 소부족 독립운동 등

32. 번역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번안(adaptation)은 문화적 지시대상을 이해할 만한 문화가 존재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간접번역전략에 속한다.
 ② 차용(borrowing)은 음가 중심 번역으로 직접번역전략에 속한다.
 ③ 치환(transposition)은 어휘의 의미를 바꾸지 않고 다른 품사어로 바꾸는 번역으로 직접번역전략에 속한다.
 ④ 직역(literal translation)은 단어 對 단어의 치환번역, 주로 동일어족이나 동일문화권에 속하는 언어 간 번역에 사용되는 것으로 직접번역전략에 속한다.

정답 ③

해설 ③ (틀림) 치환(transposition)은 어휘의 의미를 바꾸지 않고 다른 품사어로 바꾸는 번역으로 **간접번역전략**(↔ 직접번역 전략(x))에 속한다.

정리 번역전략

직접번역전략	차용	음가 중심의 번역(= borrowing) 예 Key word → 키워드
	모사	차용의 일부로서 축어적으로 번역(= calque) 예 Hot potato → 뜨거운 감자
	직역	(1) 단어 대 단어의 치환번역(= literal translation) (2) 주로 동일어족이나 동일문화권에 속하는 언어간 번역에서 사용함.
간접번역전략	치환	어휘의 의미를 바꾸지 않고 다른 품사어를 바꾸어 번역함(= transposition). 예 Many witness declined to appear in the court. → 법원출두를 거부한 증인이 많았다.
	변조	어휘의 관점, 환기되는 내용, 사고범주를 전환하는 방식(= modulation) 예 문맹률 → Literacy, 관계자 외 출입금지 → Authorized personnel only
	등가	속담이나 관용어구를 번역할 때 사용함(= equivalence).
	번안	문화적 지시대상을 이해할만한 문화가 존재하지 않을 때 사용함(= adaptation). 예 marmalade & bread → 잼과 빵

33. 「출입국관리법」 제4조 상 범죄를 범한 내국인에 대해 수사목적상 **출국금지** 조치를 할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기간연장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 ①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은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③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은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④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① (옳음)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제2항 본문

② (틀림)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은 **3개월**(↔ 6개월(x)) 이내의 기간 동안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제2항 제1호].

③ (틀림)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은 **6개월**(↔ 1년(x)) 이내의 기간 동안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제1항 제1호].

④ (틀림)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은 **6개월**(↔ 1년(x)) 이내의 기간 동안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제1항 제2호].

조문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1천만원)이나 추징금(2천만원)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5천만원)의 국제·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7.18>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할 때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을 출국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18>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기간과 출국금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8>

[전문개정 2010.5.14]

조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3>

1. 벌금: 1천만원
2. 추징금: 2천만원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2.1.13>

[전문개정 2011.11.1]

34.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녹색수배서(Green Notice) - 상습 국제범죄자의 동향 파악 및 범죄예방을 위해 발행
- ② 흑색수배서(Black Notice) - 신원불상 사망자 또는 가명사용 사망자의 신원확인 위해 발행
- ③ 오렌지수배서(Orange Notice) - 폭발물 등 위험물에 대한 경고를 목적으로 발행
- ④ 적색수배서(Red Notice) - 새로운 특이 범죄수법을 분석하여 각 회원국에 배포할 목적으로 발행

정답 ④

해설 ④ (틀림) 적색수배서(Red Notice) - 국제체포수배서로 일반형법을 위반하여 구속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범죄인인도를 목적으로 발행한다.

범죄수법수배서(자주색수배서) - 새로운 특이 범죄수법을 분석하여 각 회원국에 배포할 목적으로 발행

정리 국제수배서의 종류

적색수배서	Red Notice : Form 1	(1) 국제체포수배서 (2) 일반형법을 위반하여 구속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범죄인인도를 목적으로 발행함. (3)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경찰이 피수배자를 발견할 때 긴급인도 구속을 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범죄인 인도법에 정하는 구금의 청구·정식인도요구 등의 절차가 진행됨. (4) 적색 수배서에 의한 긴급인도구속은 범인인도전 절차의 핵심을 이룸.
청색수배서	Blue Notice : Form 2	(1) 국제정보조회수배서 (2) 피수배자의 신원과 소재확인 목적
녹색수배서	Green Notice : Form 3	(1) 상습국제범죄자 수배서 (2) 상습범이거나 재범 우려 국제범죄자의 동향을 파악하여 범죄 예방 목적으로 발행함. (3) 전과와 정도·범죄종류·국제범죄조직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중요한 국제적 범죄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발행함.
황색수배서	Yellow Notice : Form 4	(1) 기출인 수배서 (2) 기출인 소재확인 또는 기억상실자 신원파악 목적
흑색수배서	Black Notice : Form 5	(1) 변사자(사망자) 수배서 (2) 신원불상 사망자 또는 가명사용 사망자 신원파악 목적 (3) 시체의 사진과 지문·치아상태·문신 등 신체적 특징·의복 및 소지품의 상표 등 사망자의 신원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수록.

장물수배서	Stolen Property Notice	(1) 도난 또는 불법취득 물건·문화재 등 수배서 (2) 상품적 가치 및 문화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발행됨.
범죄수법수배서 (자주색수배서)	Modus Operandi, Purple Notice	새로운 범죄수법 등을 회원국에 배포, 범죄예방 및 수사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발행
보안경고 (오렌지수배서)	Security Alert, Orange Notice	폭발물·테러범(위험인물) 등에 대하여 보안을 경고하기 위하여 발행
INTERPOL-UN 수배서	INTERPOL-UN Notice	UN과 INTERPOL이 협력하여 국제테러범 및 테러단체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발행함.

35. 사회적·외적 윤리가 개인에게 투입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윤리교육은 개인의 윤리를 사회적으로 가치로운 윤리에 일치시키는 것이다.
- ② 인지단계에서는 사회적 소여로서의 사회적 윤리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③ 성찰단계에서는 구체적 상황에서 사회적 윤리를 성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④ 윤리의 인지단계 → 결정과 행위 단계 → 윤리의 성찰단계 순으로 투입된다.

정답 ④

해설 ④ (틀림) 인간은 사회적·외적 윤리를 3단계로 개인에게 투입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것은 “윤리의 인지단계 → 윤리의 성찰단계(↔ 결정과 행위 단계 (x)) → 결정과 행위단계(↔ 윤리의 성찰단계 (x))” 순으로 투입된다.

36. 다음 설명과 그 사상을 연결한 것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칼을 갖지 못한 합의’란 말에 지나지 않으며, 인간을 보호하는 힘을 갖지 못한다. - 게오르크 엘리네크
- ② 정의가 한번도 추구되지 않는 법은 부정의로운 법이며 심지어 법적성격을 결하고 있다. - 라드부르흐
- ③ 너는 인간성을, 그것이 너 자신의 인격에 있는 것이든, 어느 다른 인격에 있는 것이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취급하고 결코 수단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하라. - 칸트
- ④ 법률은 국가적으로 강제된 윤리질서이며 양자 사이에 본질적 구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 오토마이어

정답 ①

해설 ① (틀림) 계몽주의 사상가인 토마스 홉스(↔ 게오르크 엘리네크 (x))는 ‘리바이어던’에서 “칼을 갖지 못한 합의란 말에 지나지 않으며, 인간을 보호하는 힘을 전혀 갖지 못한다. 만일 아무런 권력이 정립되지 않거나, 또는 인간의 안전을 도모할 만한 위대한 권력이 없다면, (계약 후에도)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완력과 기량에 의존하게 된다”고 하면서 계약을 담보할 절대적 권위체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게오르크 엘리네크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하면서 넓은 윤리적 요청 가운데 특별히 최소한의 것만이 법적인 요청을 받는다고 주장한 철학자이다.

③ (옳음) 칸트의 이런 인격주의 윤리설은 철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인간 존엄의 권리 즉 인권의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3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의 책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은 국내에서만 허용된다.

정답 ④

해설 ① (옳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제1항
 ② (옳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제2항

③ (옳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제3항

④ (틀림)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제4항).

조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8. 냉소주의와 회의주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양자 모두 불신을 바탕으로 한 공통점이 있다.
- ② 냉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X이론에 입각한 행정관리가 있다.
- ③ 회의주의는 특정문제를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건전한 회의주의는 대상을 개선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

정답 ②

해설 ② (틀림) 냉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Y이론(↔ X이론(x))에 입각한 행정관리가 있다.

정리 냉소주의 문제와 극복

개 념	자신의 신념체계가 붕괴되었지만 새로운 것에 의해 대체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아노미 현상(니더호퍼)		
원 인	냉소주의는 공중의 생활이 위선으로 가득차 있다고 생각 할 때, 그리고 경찰조직이 하급직원에 대하여 무리한 요구를 할 때 나타남		
회의주의와의 비교		냉소주의	회의주의
	개 념	합리적 근거 없이 사회에 대한 신념의 결여로 인해 생기는 것	개별적 사안에서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여 비판하는 것
	대 상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음	대상이 특정되어 있음
	합리성	신념의 결여에 합리적 근거가 없음	의심에 합리적 근거가 있음
	개선의지	대상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음	대상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
	공통점	모두 불신을 바탕으로 한 점	
냉소주의의 극복방안	(1) Y이론에 입각한 행정관리(맥그리거) : 인간이 책임감 있고, 정직하여 민주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이론 ①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 ② 상사와 부하의 신뢰회복 ③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개선 (2) 인간관 중 X이론 : 인간을 게으르고 부정직한 것으로 보아 권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이론		

39.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에서는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에 그 예외사유를 밝히고 있다. 다음 중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에서 명시한 예외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②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가액 5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 등 편의(다만, 인가·허가·수사·단속·지도 등 민원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공무원은 제외)
- ③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 ④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소액의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정답 ②

해설 ① (적절함) 『경찰청 공무원 윤리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 ② (부적절함)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가액 5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 등 편의(다만, 인가·허가·수사·단속·지도 등 민원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공무원은 제외)”는 『경찰청 공무원 윤리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데, 같은 강령 제14조 제2항에서는 제1항 제2호는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더구나 같은 강령 제14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가액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또는 교통·통신 등 편의”라고 규정하고 있다.

- ③ (적절함) 『경찰청 공무원 윤리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2항 제1호, 제1항 제3호

- ④ (적절함) 『경찰청 공무원 윤리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2항 제1호, 제1항 제4호

조문

『경찰청 공무원 윤리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가액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 등 편의(다만, 인가·허가·수사·단속·지도등 민원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공무원은 제외한다)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소액의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7. <삭제>

-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항 제1호, 제3호에서 제5호까지 및 제7호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가액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또는 교통·통신 등 편의
3. 가액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4.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5.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④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0. 최근 경찰관이 음주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국민에게 비난을 받은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런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관 범죄는 경찰의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다.
- ② 경찰에게 법은 ‘양날을 가진 칼’이므로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배는 칼이지만, 경찰이 범죄행위를 할 경우에는 경찰을 배는 칼이 될 수 있다.
- ③ 존 스튜어트 밀은 신뢰가 의무를 유발시킨다는 관점에서 공직자에게 신뢰받는 행동을 강조한다.
- ④ 경찰관의 과다채무로 인하여 봉급에 대하여 압류가 들어올 경우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일반시민일 경우 책임이 없으나 경찰관이라는 신분 때문에 책임이 주어지는 윤리적 이중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 ③ (틀림) 델라트르(↔ 존 스튜어트 밀(x))은 신뢰가 의무를 유발시킨다는 관점에서 공직자에게 신뢰받는 행동을 강조한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기관련적 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람이다.